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가합5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0. 6. 접수 제4908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7. 5.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김미경, 판사 김현영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